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4. 18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4. 22.

다. 상 정 일 자 : 제65회 사하구 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98.5.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완 징수과장)

가.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 관리법시행규칙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규정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제1조,제2조에 사하구 입찰참가 신청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10,000원의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신설.
- 2) 제8조 수수료의 감면조항으로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있어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 비영리의 학술,교수,교사또는학생의 교육자료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지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300원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000원, 토지이용확인계획에 관한 열람은 1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수수료 대상을 구체화함.
- 4) 현행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 1매당 300원을 1면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물대장 수수료를 세분화 시킴

- 5) 음반및비디오관련 영업등록, 공연장 신고에 관한사항,출판사, 인쇄소등록 신청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신설.
- 6)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한신청 수수료징수 근거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사하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확인조항중 입찰참가 신청시 2천만원이상의 수의 계약은 10,000원의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함이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설하고 동법 제 8조 수수료 감면조항으로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사용하는 교수, 교사, 학생의 교육자료, 공공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에 따라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를 세분화 시키며 음반, 비디오관련 영업등록, 공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과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조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한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 조항임. 현행 조례상 수수료 발급이나 열람을 동일하게 취급되던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현행조례에 없는 조항을 신설 운영함으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원안 통과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질의답변요지 : 생략

5.토론요지 : 없음

6.심사결과 : 원안의결